

학교법인 만경학원 이사회 회의록 (2016년도 제 5회)

1. 일 시 : 2016년 11월 1일 15시

회의소집통보일시

2016. 10. 21

2. 장 소 : 만경고등학교내 법인실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8명

3. 참석이사 : 6명 (이사장 남궁숙
이 사 최문호, 박영창, 이상우, 박달심, 유재권)

4. 불참이사 : 2명

5. 안 건 : 가. 2016학년도 제3회 만경중 학교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나. 2016학년도 제3회 만경고 학교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다. 법인 임원(일반이사) 선임의 건
라. 정관 변경의 건
마. 일반직 승진의 건
바. 교원 휴직의 건
사. 기간제교사 임용의 건
아.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및 교육의 건

회 의 전 말

간사(고행정실장) : 이사정원 8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사장 개회 선언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5회 만경학원 이사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회의록 낭독 인준

간 사 : 2016년도 제4회 이사회 안건인 2016학년도 제2회 만경중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16학년도 제2회 만경고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법인 임원 선임 취소의 건, 법인임원(일반이사 및 개방이사) 선임의 건, 교원 정년의 건, 대우사무직원 임명의 건, 기간제교사 면직의 건, 기간제교사 임용의 건은 2016년 7월 15일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제3회 만경중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 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먼저 세입의 이전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30,045,000원이 증액되어 1,035,521,000원, 기타이전수입 1,501,000원이 증액되어 3,818,000원이 되며, 자체수입 중 학부모부담수입 7,082,000원이 감액되어 30,317,000원, 행정활동수입 388,000원이 증액되어 783,000원이며, 세출에서는 인적자원운용 28,173,000원이 증액되어 841,537,000원,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610,000원이 감액하여 41,216,000원, 기본적교육활동 9,114,000원이 감액하여 20,659,000원, 선택적교육활동 83,000원이 감액하여 9,117,000원, 교육활동지원 10,868,000원이 증액하여 85,465,000원, 학교일반운영비 4,382,000원이 감액하여 86,897,000원으로 세입세출 각각 24,852,000원이 증액된 1,085,59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 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간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예산안에 별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박영창 : 동의에 재청합니다.

최문호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6학년도 만경중학교 제3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세출 각각 24,852,000원이 증액된 1,085,591,000원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2016학년도 제3회 만경고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 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먼저 세입의 이전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은 52,019,000원이 증액되어 1,961,322,000원, 기타이전수입 2,150,000원이 증액된 20,782,000원이 되며, 자체수입 중 학부모부담수입 1,292,000원이 감액되어 500,563,000원, 행정활동수입 420,000원이 증액되어 2,177,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에서는 인적자원운용 4,699,000원이 증액되어 1,502,145,000원,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14,338,000원이 증액하여 551,254,000원, 기본적교육활동 4,148,000원이 감액하여 91,970,000원, 선택적교육활동 10,184,000원이 증액된 100,143,000원, 교육활동지원 1,644,000원이 감액하여 74,818,000원, 학교일반운영비 5,268,000원이 증액하여 144,276,000원, 학교시설확충 24,600,000원이 증액하여 24,600,000원이 되어 세입세출 각각 53,297,000원이 증액된 2,490,20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 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매점의 경우 임대료가 있는데 공공요금을 다시 징수하는 것입니까?

간 사 : 그 동안 매점은 연간 임대료만 징수하였으나 11월 24~26일에 있었던 만경고 재무감사에서 공공요금 미징수가 지적되었습니다. 아직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처분결과가 내려지면 징수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박달심 : 간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예산안에 별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유재권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상우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6학년도 만경고등학교 제3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세출 각각 53,297,000원이 증액된 2,490,206,000원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법인 이사 선임의 건

2016.11.15. 14:49

의 장 : 법인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간사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금번 본 법인 이사인 박종배, 박달심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후임을 선임해야 하는데 먼저 '박종배' 이사는 2016.11.8일자, '박달심' 이사는 2016.11.1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그 후임에 대한 선임이 필요합니다.

의 장 : 그럼 먼저 2016.11.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종배' 이사 후임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사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영창 : 의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문호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상우 : 이의 없습니다.(전원찬동)

- 박종배 이사 후임-



의 장 :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먼저 본 법인 이사로 재임 중인 '박종배' 이사의 임기가 2016년 11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0조 1항 및 만경학원 정관 제23조 1항, 제24조 2항 및 4항에 의거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의 장 : 먼저 해당자인 박종배 이사님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배 이사 후임으로 적합한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그 동안 박종배 이사는 2015년 3월부터 전임 이사의 잔여기간 동안 본 법인 이사로 재임하면서 법인 및 학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노력하신 점 등 책임자로 사료되는 바, 후임으로 박종배 이사를 재선임했으면 합니다.

의 장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달심 : 이상우 이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영창 : 동의에 재청합니다.

유재권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6년 11월 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종배' 이사 후임으로 '박종배' 이사가 재선임됨을 선포합니다.

- 박달심 이사 후임-

의 장 : 다음으로 2016.11.1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달심' 일반이사(이사장의 처)의 후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라며 사립학교법 제21조 3항에 의거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분으로 후보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자인 박달심 이사님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심 이사 회의장에서 퇴장)

최문호 : 본 법인 이사로서 지난 임기 동안 공헌하시고 만경여자중학교 및 만경여자고등학교에 재직하시면서 교육 경험 또한 풍부하여 학교 상황 및 운영 전반에 관해 잘 이해하고 계신 분으로 사료되어 박달심 이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 장 : 최문호 이사님께서 '박달심' 이사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인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박달심' 이사를 재선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박영창 : 동의에 재청합니다.

유재권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6.11.1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달심' 이사의 후임에 '박달심' 이사(이사장의 처)가 재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달심이사 입장하여 수락 인사)

◆정관 변경의 건



의 장 : 간사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먼저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어 제4조(주소)를 도로명으로 개정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13938호(2016.02.03), 법률 제14154호(2016.05.29.)에 의거 본 법인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바,
「사립학교법」 법률 제13938호(2016.02.03)에 의거 임면이 임용으로 용어가 개정되어 정관 제43조 1항 및 3항, 제44조, 제46조 4항, 제48조 2항의 조문 내용 중 임면을 임용으로, 임면권자를 임용권자로 용어를 개정하고, 제44조(휴직의 사유), 제45조(휴직의 기간) 및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의 조문 내용을 일부변경 및 신설하고,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제2항 3호, 제50조의5(의원면직의 제한)를 신설하였으며, 「사립학교법」 법률 제14154호(2016.05.29)에 의거 제43조(임면) 제7항의 신설,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의 제2항 조문의 일부변경, 제3항 및 제4항의 조문을 신설하고, 제59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의 신설,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제2항의 조문 변경,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의 조문을 일부변경 및 신설하여 정관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정관변경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창 : 「사립학교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함

니다.

이상우 : 박영창 이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문호 : 동의에 재청합니다.

박달심 : 이의 없습니다.(전원찬동)

의 장 : 참석이사 전원찬동으로 본 법인 정관 제4조, 제43조 1항 및 3항, 제44조, 제46조 4항, 제48조 2항의 개정, 제43조 제7항의 신설,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의 조문 내용을 일부개정 및 신설하고, 제48조 제2항 3호, 제50조의5를 신설, 제59조 제2조문의 일부변경, 제59조 제3항 및 제4항, 제59조의2를 신설, 제64조 제2항의 조문 변경, 제66조의2 조문을 일부변경 및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신·구대조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붙임 : 정관 신·구대조표 1부.

◆일반직 승진의 건

의 장 :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현재 만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일반 8급 '송현승' 은 2017년 1월 1일자 일반 승진대상자로 2010년 1월 1일자로 기능 10급으로 본 법인에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본 법인 정관 제84조에 의거 일반8급에서 일반7급으로 승진이 가능한 승진최저연수 2년 이상 및 근속기간 3년 6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며 보조 정원 범위내여서 승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에 임용협의 요청 결과 승진 임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

의 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달심 : 사무직원 정원 기준 내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승진대상자들이고 본 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만경중학교 행정실장 '송현승' 이 일반직 8급에서 일반직 7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문호 : 박달심 이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영창 : 동의에 재청합니다.

유재권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7년 1월 1일자로 만경중학교 행정실장 일반직 8급 '송현승' 은 일반직 7급으로 승진 임용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교원 휴직의 건

의 장 :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현재 만경중학교에 재직 중인 윤리 교사 '강영화' 가 자궁암으로 진단을 받아 수술 후 병가중으로 병의 증상이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본인이 질병치료를 위하여 2016년 12월 8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1년 동안 질병휴직을 하고자 학교장에게 요청한 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 본 법인 정관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휴직처리 여부를 이사

회에서 심의하여야 합니다.

의 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달심 : 본 법인에 재직 중인 교원이 질병으로 휴직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치료에 전념하여 완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강영화' 선생님이 휴직하게 되어 학생 수업 결손 발생 문제나 및 교원 대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 사 : 현재 만경고에 재직중인 윤리교사 '남궁윤' 이 병가기간인 2016년 12월 7일까지는 수업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휴직기간 1년은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여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영창 :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직으로 근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니 만경중 교사

'강영화' 의 질병휴직을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11 11 104

이상우 : 박영창 이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문호 : 동의에 재청합니다.

유재권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이사 전원 찬동으로 만경중 교사 '강영화' 는 2016년 12월 8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1년간 질병 휴직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기간제교사 임용의 건

의 장 : 간사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위 안건 심의 결과 만경중학교 윤리교사 '강영화' 가 질병으로 휴직하게 됨에 따라 휴직 기간에 대체할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여야 합니다. 김제교육지원청과 임용 협의 결과 휴직 기간 동안 기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6년 12월 8일 ~ 2017년 12월 7일 까지 1년 동안 근무할 기간제 교원을 모집한 결과 '김화선' 이 최종합격자가 되어 학교장이 제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윤리과는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모집 과목이 아니어서 일반 응시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인적 사항은 기재포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2016학년도 학사운영에 필요한 인원으로 모집공고를 통하여 최종 선발되어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만경중 윤리과 기간제교사 '김화선' 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여 제청하였으므로 학교장이 제청한 원안대로 임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박달심 : 이상우 이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재권 : 동의에 재청합니다.

최문호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6학년도 만경중 윤리과 '강영화' 의 휴직을 대체하는 정원내 기간제교사로 윤리과 '김화선' 을 임용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및 교육의 건

의 장 : 2016학년도 만경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청탁금지법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 사 : 여러 방송매체 및 언론을 통해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도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으로서 교육청의 각종 자료 및 연수 등을 통하여 본교 교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있으나 여러 위원들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법령이 시행되었으나 적용 초창기이고 각 대상 기관별로 사례가 다양하여 법 적용과 관련하여 혼란이 많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임직원, 교육공무직 및 위탁기관 계약직 직원 등을 제외한 정교 교직원, 업무관련성이 있는 외부 민간인(공무수행사인) 등이 해당되어 연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법인의 청탁금지담당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 이전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유재권' 이사를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선정하였으나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임기변 '유재권' 이사의 임기 동안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각종 다양한 사례가 안내된 연수 자료를 배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이사님들도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업무관련자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 장 : 요즘 청탁방지법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수 자료를 잘 살펴보고 법인과 관련하여 업무관계자로서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그럼 이상으로 2016년 제5회 만경학원 법인이사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회의의 전말을 기록하고 사실과 틀림없음을 인정 이에 서명 날인함.

2016년 11월 1일 16시 10분

이 사 장 남궁 숙 (인) 남궁 숙
 이 사 최 문 호 (인) 최 문 호
 이 사 박 영 창 (인) 박 영 창
 이 사 이 상 우 (인) 이 상 우
 이 사 박 달 심 (인) 박 달 심
 이 사 유 재 권 (인) 유 재 권

